

제2896호  
2022. 1.19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 :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 
전화 : 3396-4951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공 고

|   |        |
|---|--------|
| 선 | 기관 의 장 |
| 람 |        |

# 구 보

● 공 고

- 제2022-29호 :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..... 2
- 제2022-4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..... 5
- 제2022-46호 :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· 공고 ..... 6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29호

## 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

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0-10호, 2020. 9. 14.)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9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###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예방접종비용

#### 1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

##### 가. 백신비

| 대상감염병           | 백신종류 및 방법 | 제품별            | 백신비*(원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결핵              | BCG(피내)   | 피내용건조비씨백신AJV주  | 25,590  |
| B형간염            | 0.5ml     | 헤파문주           | 3,300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유박스비주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1.0ml     | 헤파문프리필드시린지     | 5,770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유박스비주          |         |
| 유박스비프리필드주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 | DTaP      | 보령디에이피백신주      | 10,190  |
|                 | Td        | 디티부스터주         | 12,600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|         |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dap   | 아다셀주<br>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  | 20,610 |
| 폴리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PV  | 아이피박스주   | 11,780 |
|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폴리오               | DTaP-IP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테트라킴<br>인판릭스IPV주<br>보령디타에이피아이피백신   | 22,900 |
|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폴리오,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| DTaP-IPV/Hi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펜탁심주<br>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 | 31,920 |
|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                    | Hib  | 유히브주   | 8,570  |
| 폐렴구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CV(단백결합) 13<br>PCV(단백결합) 10<br>PPSV(다당질) 23 | 프리베-13주  | 61,51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신폴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  | 52,95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프로디악스-23 프리필드시린지   | 23,340 |
|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                    | MMR  | 엠엠알 II 주<br>프리오릭스주   | 11,39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
| 수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VAR  | 수두박스주<br>바리셀라주<br>스카이브리셀라주<br>바리셀백신  | 13,02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
| 일본뇌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E (불활성화백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베로세포 유래 0.4ml<br>녹십자-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<br>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02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베로세포 유래 0.7ml<br>녹십자-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<br>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,68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E(생백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씨디제박스  | 11,520 |
| A형간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epA   | 0.5ml (어린이)<br>하브릭스주<br>아박스80U소아용주<br>박타프리필드시린지<br>박타주<br>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| 12,390 |
|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                  | HPV 2  |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 | 56,55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PV 4  |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  | 63,280 |
| 인플루엔자**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QIV  | 0.5ml<br>지씨플루퀴드라벨린트프리필드시린지주  | 11,450 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(2021-2022 절기) | (4가 인플루엔자 백신) | (어린이, 임신부) |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     | 10,830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코박스인플루4가PPF주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코박스플루4가PPF주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박씨그리프테트라주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0.5ml (어르신)   |            | 지씨플루퀴드라벨린트프리필드시린지주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코박스인플루4가PPF주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코박스플루4가PPF주        |        |

\* 2022년도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(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)

\*\* 2022-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

**나. 예방접종 시행비용: 1회당 19,420원**

- 1회당 19,420원. 단, 콤보백신(DTaP-IPV)은 1회당 29,130원, 콤보백신(DTaP-IPV/Hib)은 1회당 38,840원,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백신은 1회당 19,420원에 상당료(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)를 추가한 금액

**2.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**

| 구 분             | 1회당 지원 단가(원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(IM) | 39,220       |
| B형간염 예방접종       | 28,000       |
| 항원-항체 정량검사      | 60,420       |

\*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,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

**3. 시행일: 2022. 1. 1.부터 시행**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45호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0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지정취지:**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신청한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- 지정내용**
  - 공동주택 명칭: 한진해모로아파트 ※104동
    - 소재지: 서울 중구 왕십리로39길 30 (신당동)
  -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번호: 서울특별시 중구 제7호
  - 금연구역 지정 범위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  -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: **2022년 1월 20일**
-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**
  - 홍보 및 계도기간: ~2022. 3. 31.
  - 과태료 부과일: 2022. 4. 1.부터
  - 과태료 부과금액: 5만원
- 공고방법:** 구청 홈페이지, 게시판 등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**건강관리과(☎3396-5672)**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46호

###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· 공고

-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와 관련하여, 중구공고 제2021-249호(2021.4.7.)로 공람 · 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었기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공람 · 공고합니다.
-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(2022.1.19.~ 2022.2.18.)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월 19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# 1.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(안)

##### 가. 구역 지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구역명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 |          |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 | 증감       | 변경       |  |
| 변경 | 마포로5구역 | 중구 중림동,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| 61,730.1 | 감) 347.3 | 61,382.8 | · 서고시 제2021-265호('21.6.10.)<br>· 9-1지구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및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 |

##### 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(1) 도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| 구분 | 규모 |    |    |       |  | 기능   | 사용형태 | 연장(m) | 시점           | 종점           | 주요경과지 | 최초결정일 | 비고       |
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(m) |  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기정 | 소로 | 1  | 23 | 10    |  | 집산도로 | 일반도로 | 165   | 중구 중림동 500-4 | 중구 중림동 419-5 | -     | -     | 미집행구간 개설 |

※ 소로 1-23호선 미집행구간에 대하여 마포로5구역 제9-1지구 사업시행자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받아 개설 예정

2.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-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
1) 지구 지정(변경) 도서

| 구분 | 지구명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| 사업면적(㎡) |          |         | 비고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
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| 증감       | 변경      |   |
| 변경 | 마포로5구역 9-1지구 | 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 | 1,938.9 | 감) 347.3 | 1,591.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구고시 제2020-154호('20.11.26.)</li> <li>•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</li> <li>•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</li> </ul> |

나. 토지이용계획

| 구분       | 면적(㎡)   |          |         | 비율(%)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기정      | 증감       | 변경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| 1,938.9 | 감) 347.3 | 1,591.6 | 100.0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비기반시설 등 | 320.3   | 감) 320.3 | -       | -     | •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 |
| 획지       | 1,618.6 | 감) 27.0  | 1,591.6 | 100.0 | •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    |

다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사항

1)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| 구분   | 명칭     | 면적(㎡)   |         |         | 비율(%)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
|      |        | 기정      | 증감      | 변경      |       |    |
| 합계   |        | 1,618.6 | 감) 27.0 | 1,591.6 | 100.0 |    |
| 상업지역 | 일반상업지역 | 1,618.6 | 감) 27.0 | 1,591.6 | 100.0 |    |

※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에 의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

2)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| 구분 | 도면표시번호 | 지구명  | 위치     | 면적(㎡)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기정 | -      | 방화지구 | 서대문~마포 | 449.4 | -     | -  |

라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

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(1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○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시설명    | 위치            | 면적(㎡)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초결정일 | 비고(관리청)  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신설 | 사회복지시설 | 순화동 6-11번지 일대 | 부지면적 : -<br>(연면적 : 1,817.95㎡) | -     | 복합설치<br>(서울특별시장) |

※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,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

※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 될 수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

○변경사유

| 도면표시번호 | 시설명    | 변경내용           | 변경사유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-      | 사회복지시설 |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신설 | • 50+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|

2) 사회복지시설(공공시설) 기부채납 계획

| 구분       | 산정내용   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도입용도     | 50플러스센터         |  |
| 시설연면적    | 1,817.95 ㎡      | • 전용면적 1,106.23㎡ / 공용면적 711.72㎡<br>• 2층(공동 사용), 3층(단일 사용)              |
| 건축비      | 2,999,000 원/㎡   | •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중 종합사회복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치비용     | 5,452,032,050 원 | • 건축비 × 기부채납 연면적   |
| 부지가액     | 19,452,218 원/㎡  | • 2021년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 적용   |
| 환산부지면적   | 406.22 ㎡        | • 건축물 환산면적 + 토지분면적   |
| 건축물 환산면적 | 280.28 ㎡        | • 설치비용 ÷ 부지가액  |
| 토지분면적    | 125.94 ㎡        | • 기부채납시설 면적 ÷ 전체시설 면적 × 대지면적<br>= (1,817.95㎡ ÷ 22,975.36㎡) × 1,591.60㎡ |

3)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계획

▶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: 406.22㎡(20.33%) / 기결정 부담량 320.30㎡(부담률 16.54%)이상 계획

① 정비기반시설 부담 : -

② 지상2~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: 406.22㎡

- 토지지분 125.94㎡, 건축물 환산면적 280.28㎡[연면적 1,817.95㎡ (전용 1,106.23㎡ + 공용 711.72㎡)]
- 도입시설(지분 및 건축물)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,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
- ※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

③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: -

| 구역명          | 시행면적(㎡) | 대지면적(㎡) |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 | 건축물 기부채납면적(㎡) | 기존국공유지(무상양도)(㎡) | 부담률(%)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마포로5구역 9-1지구 | 1,591.6 | 1,591.6 | -              | 406.22        | -               | ○ 평균부담률 : 16.54%<br>○ 부담률산식<br>= 406.22㎡ / (1,591.6㎡ + 406.22㎡)<br>= 20.33% |

○정비기반시설의 부담면적(관리청으로 무상귀속)

| 구 분 | 면 적 (㎡) |           |        | 비율(%) | 비 고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
|     | 기 정     | 증 감       | 변 경    |       |     |
| 합 계 | 320.30  | 증) 85.92  | 406.22 | 100.0 |     |
| 토 지 | 320.30  | 감) 320.30 | -      | -     |     |
| 건축물 | -       | 증) 406.22 | 406.22 | 100.0 |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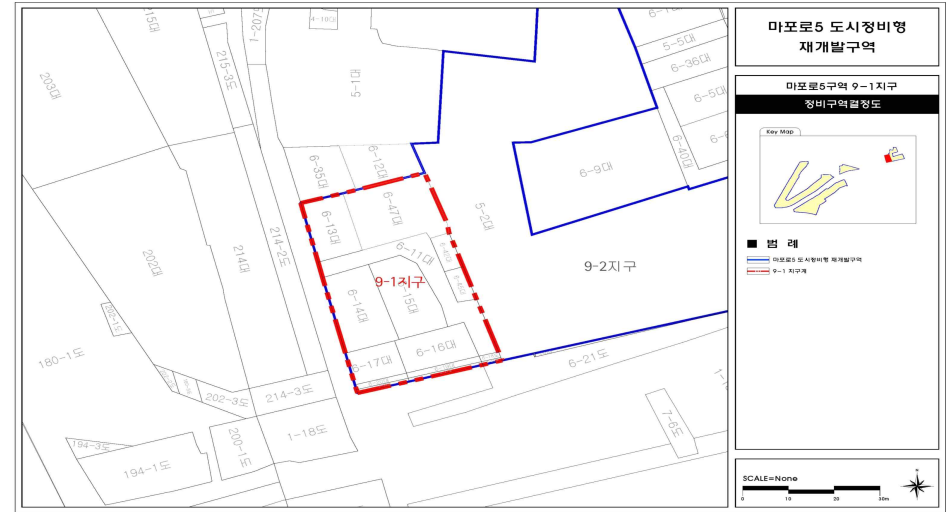
마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| 결정 구분             | 구 역 구 분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|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용도    | 건폐율 (%)         | 용적률 (%)  | 높이 (m) | 비고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| 명 칭          | 면 적(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명칭   | 면 적(㎡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기정                | 마포로5구역 9-1지구 | 1,938.9                         | 획지   | 1,618.6  | 중구 순화동 6-12 번지 일대          | 업무     | 60이하            | α        | 70이하   | -      |      |  |
| 변경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,591.6                         | 획지   | 1,591.6  | 중구 순화동 6-11 번지 일대          | 주거     | 60이하 (저층부 71이하) | 1,030이하  | 70이하   | -      |      |  |
|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         | 세 대 수  | 비 율(%) | 비고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계               |          | 68     | 100.0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공동주택            | 일반분양     | 전용 84㎡ | 29     | 42.6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장기일반민간임대 | 전용 59㎡ | 39     | 57.4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|          | 호 실 수  | 비 율(%) | 비고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계               |          | 68     | 100.0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오피스텔            | 전용 52㎡   | 34     | 50.0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전용 82㎡   | 17     | 25.0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전용 84㎡   | 17     | 25.0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심의 완화 사항          | 건폐율 완화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제4절. 건폐율 및 높이계획 - 60% 이하 (저층부 71% 이하)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용적률 완화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기준용적률 : 600%<br>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: 180%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센티브대상   | 요 건  | 인센티브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량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친환경 개발 (의무)                     | 녹색건축물 인증   | ○ 그린1등급(우수)  |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/2 부여 | 100%   | 최대 180% 적용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  | ○ 240 (kWh/㎡·y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| ○ 11%이상(비주거), 7%이상(주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주거 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| ○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도입 (전용 60㎡ 이하, 전체연면적의 20% 이상 도입 시) | 정량 부여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50% | 50%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보행 가로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|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| ○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량 부여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30% | 30%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: 258.77% ⇒ 250% 적용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정비기반 시설 (건축물 기부채납)              | 산식 = 허용용적률 × [ 1.3 × α ]<br>○ α = 공공시설 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<br>= 406.22㎡ / 1,591.60㎡ = 0.2552<br>= 780% × ( 1.3 × 0.2552 )<br>= 258.77%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|  | ○ 서소문로변 : 건축한계선 3m<br>○ 서소문로9길변 : 건축한계선 2m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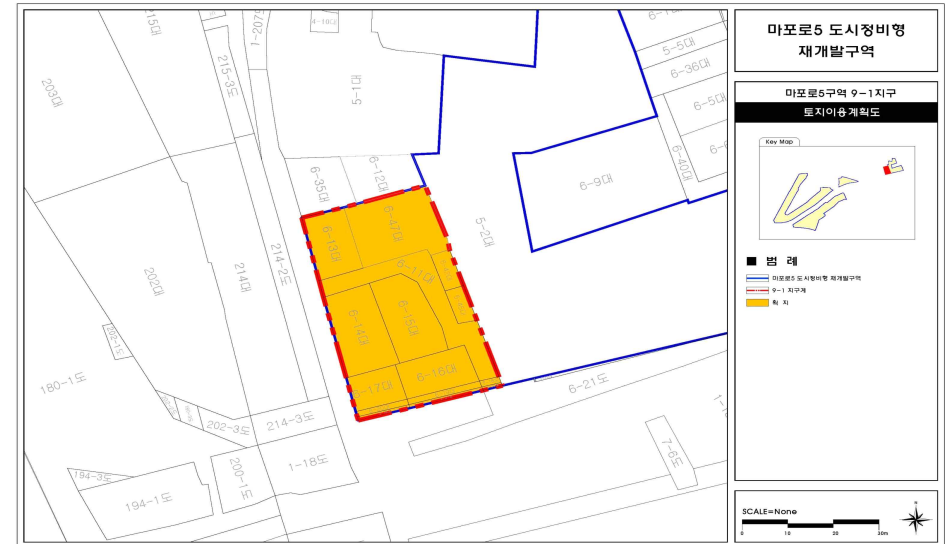
바. 기 타

- 1) 공람기간 : 2022. 1. 19. ~ 2022. 2. 18. (30일간)
- 2)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  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72)
- 3)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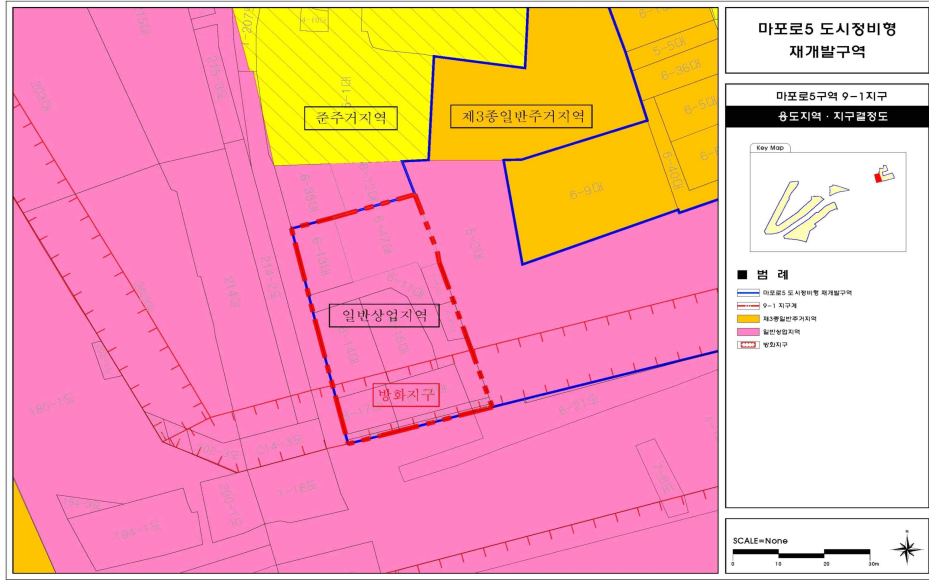
<정비구역 결정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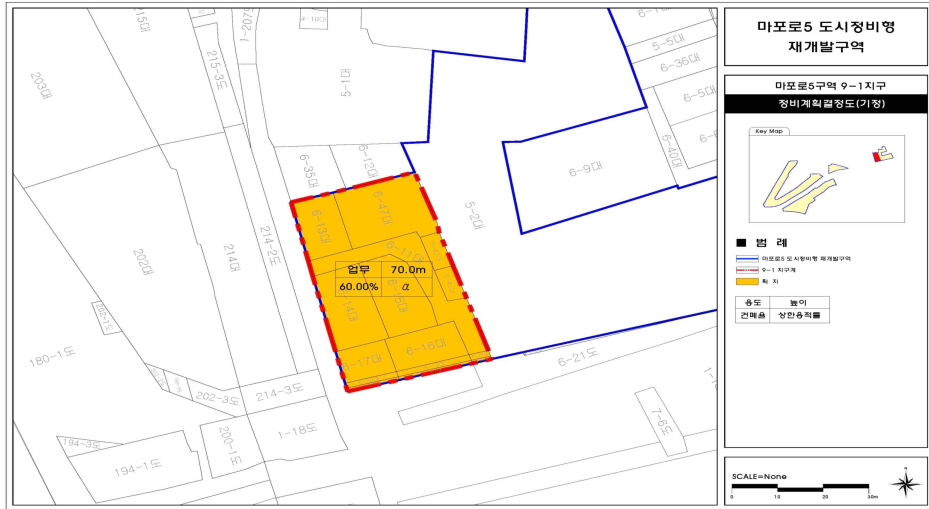
<토지이용계획도>



<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>



<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>



<정비계획 결정도(변경)>

